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5. 8. 7(금)	
		작성 문의	국조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찬희(044-200-2325)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최창행(02-2100-6381) 교육부 기획담당관 박준성(044-203-6636)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장 허수연(02-748-5170)
10시(회의종료) 이후 사용 * 회의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		배포	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(02-2100-2183)

황교안 총리, 4대악 근절대책 회의 개최

- 학교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경우, 최고 파면까지 징계 -
-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, 실효성을 높여라 -

- 황교안 총리는 8.7(금) 4대악 근절대책 회의*를 개최하여,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.
- 황교안 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사회부총리, 문체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법무부·국방부·행자부·여가부 차관,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,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였다.

□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실질적 교육을 통한 철저한 사전예방

-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,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'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'에 명문화할 예정이다.
-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,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.
-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, 점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.

②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재발방지 추진

- 교원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(117 신고전화), 온라인(117 채팅신고앱 등)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또한, 학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*한다.

*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 추진('15.8~)

-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, 즉시 직위해제하여 피해자와 격리하고,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 단축(60일→30일) 등도 추진*할 계획이다.

*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('15.8~)

③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

- 군인, 교원,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연내에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.
 - * 국가공무원법, 군인사법, 교육공무원법 등
- 또한,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, 공무원,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,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,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.
- 특히,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,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 -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*하고,
 - * 유아교육법·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('15.10)
 -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고,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·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며,
 -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고,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 의무화도 추진한다.
- 군대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,
 -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.